

구미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수도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 「구미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 개정 : 「구미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나. 「수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 반영(안 제2조)

- 현행 : 간이상수도 → 개정 : 마을상수도

다. 「수도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마을상수도 폐지 허가자를 변경(안 제11조)

- 현행 : 도지사 → 개정 : 구미시장

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상수원관리규칙」,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구미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로 한다.

제2조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마을상수도의 경우: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나.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지역의 사용자 대표협의회의 대표

자

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제2조제5호 중 “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란 소규모수도시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간이급수시설”을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로, “간이급수시설에”를 “소규모수도시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운전, 개·보수, 소독등 간이급수시설”을 “운영, 개수·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로, “관장한다”를 “맡아 처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위하여[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안내판을[별표1]에 의하여”를 “별표의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를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 「상수원관리규칙」 제24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로, “검사결과”를 “검사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의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 대장에”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3호서식의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 대장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수·보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개·보수”를 “개수·보수”로, “있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개·보수”를 “개수·보수”로,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제10조 중 “간이급수시설에”를 “소규모수도시설에”로, “간이급수시설의”를 “소규모수도시설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사전에”를 “미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간이상수도시설”을 “마을상수도시설”로,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각 호의 사항을 붙여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에 기록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폐지후”를 “폐지 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2조 중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을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간이상수도를”을 “마을상수도를”로, “간이상수도의”를 “마을상수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 지역의 급수조례”를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소규모수도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을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드는”으로, “규칙으로”를 “협의회에서”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16조 중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을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중”으로, “선출하여”를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을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주재한다”를 “주관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호 및 제2호 중 “간이급수시설”을 각각 “소규모수도시설”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 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20조 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21조 중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한다.

제23조 중 “관한 세부적인”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제1호를 별표로 하고 같은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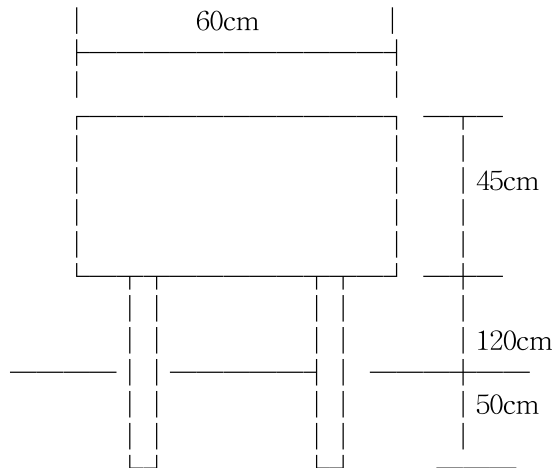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구미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 (제5조제1항 관련)



재질 및 두께 : 5mm내외의 스테인레스 재질
바탕 색 : 흰 색
글씨 : 청 색

(내용문)

알림

1. 이곳은 「수도법」 제3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 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 이상 발견 시 연락처 : 구미시 수도과 (전화 : 000 - 0000)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

관리번호		구미시 제 호										
구분	항목	내역										
일반 현황	위치	경상북도 구미시 읍면 동 마을										
	협의회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준공년월일	년 월 일						최초사업자				
투자 현황	총투자액 (만원)	구분	내역	일자	국고보조		지방비		주민부담	기타		
					자재지원	현금지원	시도비	시군비				
		최초사업비										
		시설 개량										
			1차									
			2차									
			3차									
		수원이전										
계												
시설 현황	수원의 종류	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시설의 유형	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										
	취수 시설	보유시설	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									
		시설내역	구분	제원		시설상태		특기사항				
					양호	불량						
			집수정1					심도	m			
			집수정2					심도	m			
양수모터1						마력						
양수모터2						마력						

	정수 시설	보유시설	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							
		시설 내역	구분	제원	시설상태		특기사항			
					양호	불량				
			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송배수 관로	구분	송수관로			배수관로			관종별 총연장	
			관종	직경	연장	관종	직경	연장		
		소계		mm	M		mm	M		
소계			mm	M		mm	M			
소계			mm	M		mm	M			
급수 현황	계획	급수인구 : 명		급수인구 : 가구		1인당1일급수량 : 리터				
	현재	급수인구 : 명		급수인구 : 가구		1인당1일급수량 : 리터				
	제한급수	1차 :	2차 :	3차 :	계 : 일간					
수질 검사	검사시설	취수원		배수지		수도꼭지		검사기관	(개항목)	
	합격여부							검사일시		
개량 내역	개량일자	개량시설명		소요액(만원)		시공자		개량내용		
수원 이전	이전사유			이전일자:		소요비용:		만원		
	이전위치									

*시설폐지 시는 뒷면에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 대장

관리번호	시제 호	점검일자 : 점 검 자 :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 취수원의 보호 · 관리상태			
○ 침전지의 운영 · 관리상태			
○ 여과지의 운영 · 관리상태			
○ 배수지의 운영 · 관리상태			
○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 소독시설의 운영 · 관리상태			
오염물제거	취수원부근		
	배수지부근		
기 타			

※ 매 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 첨부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 대장

관리번호	시제 호	점검일자 :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1. 소독시설유무 및 가동상태			
2.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 이내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3.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에 유독성 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4.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5.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유무			
6. 외관(냄새, 색, 탁도)은 양호여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구미시간이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과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상수도”라 함은 <u>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u>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u>수도법 제3조제13의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u> 3. “관리자”라 함은 <u>간이상수도의 경우 당해지역의 시장을,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당해</u>	<u>구미시 마을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u> 제1조(목적) -----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과 소규모급수시설----- -----. 제2조(정의) ----- ----- 뜻은 -----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마을상수도의 경우: 구미

지역의 사용자대표협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나.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지역의 사용자 대표협회의 대표자

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
-----란 소규모수도시설-----
-----.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 소규모수도시설에 -----
-----.

② ----- 따른 -----

----- 제7조에 따른 -----

-----.

제4조(시설의 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영, 개·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별지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①시장은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제4조(시설의 관리) ① -----
----- 운영, 개수·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
----- 말아 처리한다.

② ----- 소규모수도시설-----
-----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

-----.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
-- 소규모수도시설-----

-- 별표의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을 -----.

② ----- 소규모수도시설 ---

-----.

제6조(수질검사) ① ---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 「상수원관리규칙」 제24조,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
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
사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
여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관리자는 간이급수
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
· 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
야 한다.

② (생 략)

제9조(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수원
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
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
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 검사 결
과-----.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항의 수질검사 결과
를 제16조에 따른 -----
-----.

제7조(점검) ① ----- 소규모수
도시설-----

별지 제2호서식의 소규모수도
시설 정기점검 대장에 -----

----- 별지 제3호
서식의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
검 대장에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유지보수) ① -----

----- 제10조에
따른 -----
----- 소규모수도
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수·보수
-----.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관리자는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①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견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공급 등으로

개수·보수 ----- 있다.

② ----- 개수·보수-----

----- 미리 -----

-----.
-----.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

- 소규모수도시설 -----

----- 소규모수도시설 -----

--.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

- 소규모수도시설-----
----- 미리 -----

-----.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시장이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 (생략)

3. 폐지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요금징수) ①시장은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회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

----- 아니한다.

② --- 마을상수도시설-----

----- 각 호의 사항을 붙여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1. 2. (현행과 같음)

3. 폐지 후 -----

<삭 제>

제12조(건강진단) -----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
-----.

제13조(요금징수) ① ----- 마을상수도를 -----
----- 마을상수도의 -----
-----.

② --- 제1항에 따라 -----

여야 하며, 당해 지역의 급수조
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관리비용) ①시장이 제13
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
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
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
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
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

②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
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
간의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계량기) ① (생 략)
②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제16조(설치) 간이급수시설 사용
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
리비용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①협의회는 간이급
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

----- 「구미시 수도급수 조
례」-----
-----.

제14조(관리비용) ① ---- 제13조
에 따른 -----
----- 않는 -----
--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소규모수도시설 -
-----, -----

-.

②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드
는 -----

----- 협의회에서 -----.

제15조(계량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드는 -----
-----.

제16조(설치) 소규모수도시설 --

-----.

제17조(구성) ① ----- 소규모수
도시설 사용자 중 ----- 성

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② 협회의 대표자는 간이급수 시설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 (생략)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이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3. ~ 5. (생략)

제19조(개최)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 3. (생략)

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실비변상) 시장은 간이상수도 협회의 대표자에게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

별을 고려하여 -----
-----.

② ----- 소규모수도 시설 사용자 중-----.

③ -----
----- 주관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기능) -----
-----.

1. 소규모수도시설-----

2. 소규모수도시설-----

3. ~ 5. (현행과 같음)

제19조(개최) ① -----
-- 어느 하나-----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시장-----
-----.

제20조(실비변상) ----- 마을상수도 -----

----- 드는 -----

- 조례에서 -----

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1조(교육) 시장은 <u>간이급수시설</u>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 <u>소규모수도시설</u> ----- ----- ----- ----- ----- -----.
제22조(관리의 위탁) ①시장은 <u>간이상수도</u>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2조(관리의 위탁) ① --- <u>마을상수도</u>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u>관한 세부적인</u>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 - <u>필요한</u> ----- -----.

관계법령

□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0. ~ 13. (생략)

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15. ~ 32. (생략)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

인가관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4. (생략)

5. 마을상수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② ~ ⑤ (생략)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취수량·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발표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업무를 담당한 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건강진단)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 안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7조(마을상수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상수도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생략)

□ 「상수원관리규칙」

제24조(원수의 수질검사기준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원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하천수 및 호소수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2. 복류수 및 강변여과수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하천수의 환경기준
3. 해수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해역의 환경기준
4. 지하수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먹는물의 수질기준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는 평상시의 기상상태에서 7일 이상의 간격으로 3회 채취한 원수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수질검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① 「수도법」 제29조제1항,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

가. 정수장에서의 검사

(1) 별표 1 중 냄새, 맛, 색도, 탁도(濁度), 수소이온 농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일 1회 이상

(2)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 : 매주 1회 이상. 다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 정량한계치(「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검출할 수 있는 최저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 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3)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다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냄새, 맛, 색도, 수소이온 농도, 염소이온, 망간, 탁도 및 알루미늄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분기 1회 이상

(4) 별표 1의 제4호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다만, 총 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및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매월 1회 이상

나. 수도꼭지에서의 검사

(1)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2) 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에 대한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동, 아연, 철, 망간, 염소이온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다. 수도물 급수과정별 시설에서의 수질검사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총트리할로메탄, 동, 수소이온 농도, 아연, 철, 탁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급수과정별 시설[정수장, 정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주배수지를 기준으로 하여 급수구역별로 주배

수지 전후, 급수구역 유입부, 급수구역 내 가압장(加壓場) 유출부, 광역 및 외부수수계통(外部授受系統)의 수수지점, 정수계통이 다른 계통과 합쳐지는 지점, 급수구역 관말(管末) 수도꼭지]에서의 수질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2. 마을상수도·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가.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불소,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 탁도, 알루미늄, 잔류염소, 붕소 및 염소이온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다만, 붕소 및 염소이온은 원수가 해수인 경우에만 검사하며,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반기 1회 이상

나. 별표 1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전항목 검사 : 매년 1회 이상. 다만,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3년에 1회 이상

② 「먹는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전항목 검사 : 매년 1회 이상

2.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및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③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질검사는 별표 2에 따라 추출되는 수도꼭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저수조를 통하여 수돗물이 공급되는 수도꼭지가 총 검사대상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거나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수질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거나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수질검사 외에 특정물질 등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면 그 물질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질검사지점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건강진단) ①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수도법」 제32조제1항(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에 관하여 건강진단을 받아

야 한다. 다만, 소화기계통 전염병이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공장 또는 수도의 취수장·배수지 부근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취수·제조·가공·저장·이송시설에서 종사하는 자와 「수도법」 제32조제1항(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취수·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자 : 6개월마다 1회

2.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1호 외의 자 : 환경부장관이 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관할 보건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및 소화기계통 전염병으로 한다.

소관 실·과		수 도 과
입 안 자	과 장	강 창 조
	담 당	정 연 상
	담 당 자	이 희 영 (480-4452)